

공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①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35조(교육과정)에 의거하여 공학계열 단과대학(이하, '단과대학'이라 함)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12.22., 2014. 11. 24, 2017. 6. 7., 2021.4.21.)

② 이 규정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, 인증 및 적용 대상, 이수 및 졸업, 전입생 수용,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. (개정 2007.10.30, 2009.12.8)

제2조 (기본이념) 공학교육인증제라 함은 (사)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을 보증하는 제도로서,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하여 재학생의 학습성도가 향상되고,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지속적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순환 개선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의 도모를 본 규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 2 장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

제3조 (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)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각 학과(전공)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'심화프로그램'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'일반프로그램'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. 프로그램 별 명칭과 학위 명칭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시행규칙(이하 '시행규칙') 제2조와 같다. (개정 2009.12.8)

② '심화프로그램'의 운영은 학칙과 본 규정을 근간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제정된 심화프로그램 운영 내규에 의하여 운영한다. (개정 2009.12.8)

③ '일반프로그램'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한다. (개정 2009.12.8)

④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(전공)는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심화프로그램 책임자(Program Director, 이하 'PD')를 별도로 둘 수 있다. (신설 2009.12.8)

제4조 (삭제 2006.9.1 - 시행규칙 제2조로 이동)

제 3 장 인증 및 적용 대상

제5조 (인증 대상)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(전공)의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을 공학교육인증 적용 대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. (개정 2009.12.8)

② (사)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공학교육인증은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심화프로그램의 졸업대상자 선정은 공학교육인증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른다. (개정 2010.12.22)

제6조 (삭제 2006.9.1 - 시행규칙 제3조로 이동)

제 4 장 인증 요건

제7조 (학점 이수 및 졸업 요건) ①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칙과 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

한 졸업학점을 프로그램 교과이수체계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12.8)

②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제1항 외에 프로그램 운영내규에서 정한 별도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12.8., 2016.1.19)

③ 심화프로그램 별 졸업요건 및 졸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본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. (신설 2009.12.8, 개정 2016.1.19)

제 5 장 심사 시기 및 이수포기

- 제8조 (심사 시기 및 이수포기)**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의 학생은 학칙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전원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나, 시행규칙 3조에서 명시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,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. (개정 2009.12.8., 2011.11.1., 2016.1.19., 2018. 9. 4)
- ② 이수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.

제 6 장 전입생 수용

- 제9조 (전입생)** ① 전입생이라 함은 심화프로그램에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, 복학생, 재입학생, 전과생 등을 의미한다. (개정 2007.10.30, 2009.12.8)
- ② 프로그램에 전입한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③ 전입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장에 따른다.

제 7 장 공학교육혁신센터

- 제10조 (공학교육혁신센터)** (신설 2006.9.1) ① 공학교육인증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관장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기구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. (개정 2007.10.30, 2009.12.8)
- ②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- 제11조 (위원회)** ①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내 제 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 (개정 2009.12.8, 2010.12.22)
- ② 각 프로그램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- ③ (삭제 2006.9.1 - 시행규칙 제 4장으로 이동)
- ④ 각 위원회의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규칙 제 4장을 따른다.

제 8 장 기 타

- 제12조 (기타)** ① 본교의 학칙 및 시행규칙과 공학인증제 운영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대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. (개정 2009.12.8)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과(전공)에서 정한 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에 따른다. (개정 2009.12.8)
-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과대학 2006.3.1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2007.3.1 이후 편입하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. 19.)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8조의 1항의 규정은 2016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7. 6. 7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9. 4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4.21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